

상호협력 협약서

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, (협)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은 각 기관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유관기관 연계·협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 공동체 복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50+사회공헌 일자리모델 발굴 및 확산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내용)

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그 외 부속서 상 연계 업무에 적극 협력한다.

1. 서울시50플러스재단(서부캠퍼스)은 50+세대가 인생 경험을 발휘하여 마을 공동체의 자원을 조사·기록하는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.
2.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지역기반 사업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활동처 발굴 및 운영협조 요청, 성과 확산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3. (협)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은 전문 아카이빙 콘텐츠를 연계하여 참여자 교육 및 사업 운영에 전반에 대한 연구·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
제3조(운영원칙)

각 기관은 상호교류와 협력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마련하고,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상호신의)

각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,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5조(협의조정)

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유지)

각 기관은 서명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업무 협조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할 수 없다.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위반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.

제7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

1.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매년 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.
2. 본 협약의 증빙을 위하여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,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 년 7 월 19 일



(협)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

서울시
50플러스재단

서울시마을공동체
종합지원센터

(협)아카이빙
네트워크연구원

대표이사 이 경 희

센터장 대행 전 민 주

원장 손 동 유

(서명) 이경희

(서명) 전민주

(서명) 손동유